

연구자료 D348 | 2013. 1.

#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김 수 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수 석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4장 집필

## 머 리 말

---

이 연구는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의적이지만 전제조건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정책사업의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인데, 이 등록제는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아직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정책적 활용실태 분석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농업경영체가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하는 등록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제도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일 사례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특별휴직 기간 동안 독일 현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 분석을 완수한 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연구가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농정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3.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 요 약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세계집행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다.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 또는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런 절차를 마친 농업경영체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의무등록이 아닌 임의등록으로 등록절차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접지불금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하나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 즉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 창업하는 농업경영체가 취미농이 아닌 온전한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하며 축산경영체의 경우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한 경우에 농업경영체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농업경영체는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세를 면제 받고, 유류세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다. 또한 농업경영체가 주업농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억제영역인 자유공간에 농업용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협의의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에 해당하면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이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등

록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한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EU의 공동농업정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VeKoS)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국내에서 자국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정책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EU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EU 규정에 의거한 InVeKoS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경영체가 이 InVeKoS에 등록하는 것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한다.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의 인적사항과 토지(이용)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InVeKoS는 경종농업경영체뿐 아니라 축산경영체를 포함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축산경영체에 대한 등록은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를 InVeKoS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독일의 InVeKoS는 농업경영체의 인력데이터와 농지식별시스템(FLIK) 및 축산업등록제를 활용하여 EU의 직불금을 통합적으로 배분·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중 보다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독일 고유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해당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이다.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의 인증요건이 명확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경영체의 안정과 사업자 신고를 통한 ‘정상적’ 사업체의 면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업경영체 인증요건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 해당하는 등록제는 현재 우리나라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도화된 등록제가 구체적인 정책사업과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각종 직불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 The Operating System of the German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and Its Implications

## Background of Research

The Korean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was implemented in June 2008, but it has not been efficiently utilized and applied due to its inadequate link with specific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As this is the case, this study aims to draw some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by examining its institutional configuration and operating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registration system.

## Method of Research

In order to analyze the German system, the author has worked in 2012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Institute of Agricultural Policy of Federal Germany (Thünen Institut). He has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researchers at the institute and officials and experts who are concerned with the matters related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Analyzing the council regulations of the EU and the laws of Germany has provided the basis for this research.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re are two concepts of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in Germany. The first one is the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under the tax law, and the other is the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under the business support laws which promote agricultural policie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under the tax law, several steps need to be taken in the registration process, including subscription to social insurances. In other words, a newly founded agricultural business will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farming business (not as a hobby farming) if it joins four social insurances and registers its establishment with the tax office. In the case of a livestock business, it should register as a livestock business. The registered business then can receive various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The registration of an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under a business support law is not obligatory but optional. However, if not registered, one can not receive the political support such as direct payment. So the registration program functions as a prerequisite to receiving a support. In order to receive the single payment scheme (SPS) of the EU, an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must register its data about labor and land in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EU. A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e German system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an agricultural business under the tax law is that it not only clarifies the requirements of a legitimate agricultural business but also gives the management stability through social insurances.

Researcher: Soo-Suk Kim

Research Period: 2012. 3 ~ 2013. 1

E-mail address: soosuk@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선행연구 검토 ..... 2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제2장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1. 농림업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 6
- 2. 과세 관련 업무 신고 ..... 16
- 3. 농업회의소 가입 ..... 18
- 4. 축산경영체의 신고 및 등록 ..... 20
- 5. 사료사업체 등록 ..... 23
- 6. 농업경영체의 혜택 ..... 23

### 제3장 정책적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 1. 개요 ..... 33
- 2. EU의 통합관리통제시스템(IACS) ..... 35
- 3. 독일의 InVeKoS ..... 48

###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57
- 2. 시사점 ..... 64

- 참고 문헌 ..... 67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산재보험부과표준 산출방식(예시) .....	8
표 2-2. 납입하는 산재보험료 도출방식(예시) .....	9
표 2-3. 농림업 부가가치세 정규과세 정산방식 .....	30

## 그림 차례

---

### 제3장

그림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	51
그림 3-2. 독일의 InVeKoS 농업경영체 등록 .....	52
그림 3-3. 독일의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록과정 .....	52
그림 3-4. 독일의 단일직불금 관리체제 .....	53
그림 3-5. 독일의 산란계등록번호 체계 .....	55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초로 기본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되었음. 또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에서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시행 5년차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마치고 2010년부터 상시관리체제로 들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일괄 등록정보에 대해 검증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종 농림사업 및 직불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시행 5년차에 들어선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갖는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늦어져서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지금까지 사업진척 현황은 등록률 및 등록정보 정확도의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농림사업)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연계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성화와 등록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나아가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발전과 운용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 사례를 고찰하고 거기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함.
  -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고유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통 위에 EU 차원의 단일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한 등록제가 결부되어 있는 모델적 사례를 구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에 대한 독일 사례연구는 우리나라 등록제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음.
- 이 연구는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제도적 구성 및 운용시스템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 선행연구 검토

- 오내원 등(2006)은 농가등록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방안에 대

하여 가능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시안을 제시함으로써 농가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여기서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사례의 하나로 소개되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구의 유일한 연구 결과가 됨.

- 김수석 등(2011)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등록제의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음.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1.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3부분으로 구성됨.
- 제2장에서는 독일 고유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및 등록내용을 소개·분석하는 것임. 소위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가 어떠한 등록절차를 거쳐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되고 인정된 농업경영체는 어떠한 혜택을 갖게 되는가를 분석함.
- 제3장에서는 농업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어떠한 등록 및 전제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를 분석함. 여기서는 특히 EU 차원의 직불금을 받기 위해 시행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VeKoS)의 등록제도가 소개 및 분석됨.
- 마지막인 제4장에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이 제시됨.

### 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연구자가 2012년 특별휴직 기간 동안 독일의 연방농업정책연구원인 튀넨연구소(Thünen Institut)의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튀넨연구소 내의 관련 전문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실무진들과 면담하여 얻은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 제 2 장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세계집행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임.
  - 일반적으로 세계상의 농업경영체에는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에는 의무사항이 없고 임의로 등록하는 것임.
  -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접지불금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이행하고 있음.
  
-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하나의 농업경영체, 즉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
  - 이러한 의무적 등록과정은 모든 농업경영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됨.
  - 다시 말해 취미농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사업체는 산재보험을 가입

하는 의무만 있지만, 제대로 영농활동을 하는 부업농 및 주업농은 해당되는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새로 창업하는 농업경영체가 취미농이 아닌 온전한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sup>1</sup>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하며 축산경영체의 경우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함.

## 1. 농림업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 1.1. 산재보험 가입

- 농업경영체<sup>2</sup>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업직능조합(Landwirtschaftliche Berufsgenossenschaft, 약칭 LBG)의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에 가입해야 함.
  - 농업직능조합은 농림업사업체<sup>3</sup> 종사자를 위한 법적 산재보험 수행기관임.<sup>4</sup>

1 여기서 말하는 4대 사회보험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4대 보험, 즉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산재보험, 농업연금보험, 농업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을 말함.

2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사업체)에 대한 규정은 거의 예외없이 임업경영체를 포함한 농림업경영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를 농림업경영체로 표현해도 실제로는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3 여기서 농림업사업체로 표현한 이유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중에서 농림업경영체로의 인정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이행한 사업체를 농림업경영체로 나타내기 위함임.

4 니더작센 주의 경우 니더작센 주 및 브레멘 시를 담당하는 농업직능조합(LBG), 즉 ‘니더작센 및 브레멘 농업직능조합(Landwirtschaftliche Berufsgenossenschaft Niedersachsen-Bremen)’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직능조합의 출장소는 아우리히(Aurich), 링엔(Lingen)

- 농업직능조합의 산재보험 가입은 모든 농림업사업체의 의무사항이며, 여기에는 개인적인 사적 (산재)보험 가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농업직능조합의 산재보험 대상은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이나 영업행위 등으로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농이나 소규모의 사업체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함.
  - 다만 특작이 아닌 경우, 0.25ha 이하 규모의 경종작물사업체는 보험가입이 면제됨.
  - 생산물을 주로 자급자족 형태로 소비하고 특별한 노동력이 정기적으로나 상당한 규모로 투입되지 않는 텃밭 및 클라인가르텐은 토지이용생산에도 불구하고 농림업사업체로 간주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됨.
- 농림업사업체의 종사활동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관할 농업직능조합(LBG)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료의 산정과 관련이 있는 사후의 변경사항은 4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산재보험대상자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보험대상자에 포함됨.
  - 농림업사업체의 가게(구성원)도 사업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에 포함됨.
  - 보험대상행위는 노동현장사고 및 이동사고와 직업병이 됨.
- 경영주는 산업재해를 통상 3일 이내에 농업직능조합(LBG)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치명적이거나 위독한 증상은 즉시 신고해야 함.

- 소요되는 재정적 재원은 부담할당절차에 따라 경영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달하고, 피고용인은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음.
  - 부담할당절차에 따르면 부담하는 보험료가 당해연도의 직능조합 재정소요를 충당할 수 있게 책정되어야 함.
  - 재정충당에 필요한 보험료 책정은 주로 토지를 이용하는 농업과 임업의 경우에 전년도 5월 15일의 경영관계에 기초한 (이른바) 노동소요 산정에 따라 이루어짐.
  
- 노동소요 산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과 양축 형태가 ha당 혹은 가축당 특정화된 산정단위로 계산됨<표 2-1>.
  - 여기서 계산된 산정단위의 합계는 산정단위당 연간 보험단가를 곱하여 납입보험료 크기를 구함.
  - 여기에다 기본보험료를 더하고, 연방정부의 보조액을 감하여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의 크기를 확정함<표 2-2>.

표 2-1. 산재보험부과표준 산출방식(예시)

이용형태	ha/ 가축수	노동소요 산정단위 (BE)	계
경종작물 수확	9.12	0.9790	8.93 BE
사탕무	4.25	1.6500	7.01 BE
목초	30.23	0.7753	23.44 BE
정원	1.00	3.5200	3.52 BE
농업활동 가산평가	44.60	0.7280	32.47 BE
산림	15.15	1.0483	15.88 BE
농장가옥 및 건물	0.64	0.00	0.00 BE
양돈	2,700	0.0543	146.61 BE
합계			237.86 BE

자료: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2012)

-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축산만 하는 사업체는 노동소요 산정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도출하지 않고 사업체의 특성 및 산재위험을 고려한 실제투하노동 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함.
  - 임노동사업체와 내수면어업경영체 및 양봉업체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해진 보험료로 결정됨.

표 2-2. 납입하는 산재보험료 도출방식(예시)

구 분	보험단가	계
① <표 2-1>에 따라 산정된 노동소요 합산(보험부과표준) : 238 BE	5.32유로	1,266.16유로
② 기본보험료(50 BE) 추가	5.32유로	+ 266.00유로
△ 총 보험료		1,532.16유로
③ 연방정부 보조 차감		- 751.38유로
△ 지불하는 순 보험료		780.48유로

자료: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2012)

- 농업직능조합(LBG)은 산재보험 이외에 다른 사회보험, 즉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의 의무가입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함.
  - 이에 따라 산재보험을 위해 농림업사업체가 농업직능조합(LBG)에 가입 신청을 하면 작성하는 설문내용을 기초로 해서 농업직능조합은 해당 사업체가 다른 사회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함.
  - 검토결과 해당 사업체가 다른 사회보험의 의무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법적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업직능조합(LBG)은 해당 사업체로 하여금 곧바로 요구되는 다른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함.

## 1.2. 농업노령보험(농업연금보험)

- 농업인노령보험법(Gesetz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 약칭 ALG)에 따라 실시되는 농업노령보험의 수행기관은 농업노령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Alterskasse, 약칭 LAK)임.
- 농업노령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는 토지경작을 하고 보험공단에 의해 정해진 최소영농규모에 도달한 농림업 및 수산양식업 사업체가 됨.
  - 그리고 내수면어업경영체와 양봉업체 및 양을 방목하는 사업체도 노령보험 의무대상자가 됨.
  - 여기서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러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임차인과 경작권자가 포함됨.
- 농림업의 최소영농규모는 관할 농업노령보험공단에서 확정하는데, 니테르 작센 주의 보험공단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소영농규모는 다음과 같음.<sup>5</sup>
  - 8ha 규모의 (경종)농업
  - 2.2ha의 원예 및 특작
  - 75ha의 임업
- 한편 내수면어업의 최소규모는 연간 120일의 노동소요이고 양봉업의 최소규모는 100개의 벌통으로 법적으로 규정됨.
  - 양 방목의 최소영농규모는 큰 양 240마리를 무리로 사육하는 것임.<sup>6</sup>
- 순수한 취미농은 최소영농규모의 도달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령보험의 가입

<sup>5</sup>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적으로 다른 최소영농규모가 과도기적으로 통용되었지만, 이후로 창업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새로 시행되는 규정만 적용됨.

<sup>6</sup> 양 방목 이외의 다른 축산은 농업노령보험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의무자가 되지 않음.

- 취미농에 대한 증명은 쉽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농업경영체보조금과 같은 지원금에 대한 요청권리가 원칙적으로 취미농에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업체가 취미농으로 간주됨.

○ 농업노령보험의 가입의무 대상자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 및 해당 사업체에 주업으로 종사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가족구성원이 됨.

○ 가입의무에 대한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짐.

- 정규적인 비농업소득이 월 4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 실업수당의 대상이 되고 실업수당 대상자가 되기 전에 노령보험과 관련한 가입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 자녀 부양, 요양대상자에 대한 요양 혹은 군(대체)복무 완료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연금보험 가입의무자가 된 경우
- 만 65세까지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 수령에 요구되는 15년간의 (최소)대기기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될 때

○ 농업노령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조정되는데, 사업주 및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가 2012년에 각각 월 224유로, 그리고 다른 가족종사자의 보험료가 그 절반(112유로)으로 책정됨.

- 낮은 소득 수준이라는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여기서 소득의 하한선은 개인의 경우 연 15,500유로이고, 부부의 경우 연 31,000유로임.
- 보조금의 크기는 소득 하한선 이하의 소득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사업주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9~134유로가, 그리고 가족종사자에게는 월 4.5~67유로가 지원됨.

- 보험료 지원의 근거는 사업주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됨. 연간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소득이 합산되어 산출되는데, 여기서 소득세의 크기도 확정됨.
  - 부기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업의 근로소득을 경영가치의 연계 가치(Beziehungwert)로 도출해 냄.
- 농업노령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체가 보험공단(LAK)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농림업사업체가 창업 시 농업직능조합(LBG)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족됨.
  - 이것으로 해서 신고한 사업체가 최소영농규모에 도달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이 농업직능조합으로부터 농업노령보험공단으로 자동적으로 전달됨.
-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결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노령보험 가입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농업노령보험공단에 추가로 신고해야 함.
  - 특히 배우자에 대해 보험가입 면제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노령보험공단에 이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함.

### 1.3. 농업의료보험

- 「농업인을 위한 의료보험 두 번째 법(Zweites Gesetz über die Krankenversicherung für Landwirte, 약칭 KVLG 1989)」에 의해 실시되는 농업의료보험의 수행기관은 농업의료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Krankenkasse, 약칭 LKK)이 됨.
- 농업의료보험의 가입의무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앞서 서술한 농업노령보험의 가입대상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 다만 농업인의 비농업소득 크기가 법적으로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영농규모가 50%는 넘지만 100%에 도달하지 않은 사업체

의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게 함.

- 해당 사업체에 주업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도 보험가입의무대상자가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앞서 언급한 농업노령보험의 가입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먼저 가족구성원의 범위에서 3촌 관계의 친족과 2촌 관계의 척족이 포함됨.<sup>7</sup>
  -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 포함됨.
  - 주업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주당 노동시간이 최소 20시간이 되거나 종사 활동이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 때를 의미함. 이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가 월 4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가 됨.
  - 이 밖에 농업노령보험의 연금 신청자 및 수령자도 농업의료보험 가입의 무자가 됨.
- 주업으로 사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가족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됨.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업의료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음.
  - 주업으로 종사하는 비농업 사업이 있거나
  - 보수를 받고 고용인으로 종사하여 농업 이외의 다른 의료보험의 가입의 무가 성립하는 경우
- 부업농의 경우에는 농업의료보험의 가입의무가 성립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함.

---

<sup>7</sup> 친족은 부모형제 등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족관계를 말하고 척족은 장인·장모 및 사위 등 배우자의 부모형제 또는 자녀의 배우자와 갖는 인척관계를 말함. 독일에서 사용하는 촌수는 우리나라와 동일함.

- 농업의료보험의 가입 면제는 농업경영체가 경영가치 6만 마르크(DM)<sup>8</sup>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입의무가 성립한 후 3개월 이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심사가 이루어짐.
  - (농업)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면제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이 면제는 다른 형태의 의료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의료보험 가입면제 신청에 앞서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여기서 3개월의 시효는 창업 개시와 함께 성립하는 것임(농업의료보험공단에 대한 통지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님).
  
- 농업의료보험의 가입신고는 농업노령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림업사업체가 창업 시 농업직능조합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족됨.
  - 이것으로 해서 신고한 사업체가 최소영농규모에 도달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이 농업직능조합으로부터 농업의료보험공단(LKK)으로 자동적으로 전달됨.
  
- 농업의료보험의 보험료 등급은 20가지가 있음. 여기서 등급구분의 근거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이른바 ‘교정된 토지가치(korrigierter Flächenwert)’에 따라 이루어짐.
  - 교정된 토지가치는 경작하는 토지에 사업체가 위치한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의 헥타르 가치(1ha의 토지점수)를 승수로 곱하여 도출된 토지가치에 대해, 다시 관련된 특정한 소득관계에 상응하는 연계가치(Beziehungwert)를 승수로 곱해 산출함.
  - 니테르작센 주의 농업의료보험공단에서는 2012년에 최저 월 60.89유로와 최고 월 487.83유로 구간에 20개 보험료 등급을 설정해 놓고 있음.

<sup>8</sup> 환율상으로 이전의 1마르크는 0.5유로에 해당하는데, 경영가치 평가법령에서는 여전히 마르크라는 산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 주업으로 종사하는 가족구성원의 보험료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 사업주 보험료의 절반이 됨.
  -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가족구성원 보험료는 사업주 보험료의 1/4로 책정됨.
  - 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보험료도 사업주 보험료의 1/4이 되고, 받는 급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음.
  - 가족구성원과 훈련생의 의료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함.

#### 1.4. 농업요양보험

- 「사회법전 XI(Sozialgesetzbuch XI)」에 의한 사회요양보험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농업요양보험의 수행기관은 농업요양보험공단(Landwirtschaftliche Pflegekasse, 약칭 LPK)이 됨.
- 농업요양보험의 근거 및 기초는 기본적으로 농업의료보험의 내용과 동일함.
  - 이에 따라 농업의료보험의 실시요령이 대부분 농업요양보험에 적용됨.
- 농업요양보험의 보험료는 농업경영주와 가족구성원종사자에 대해 의료보험료에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형태로 부과됨.
  - 추가적 부가되는 요양보험료는 2012년의 경우 농업의료보험료의 14.22%로 결정됨.
  - 다만 만 23세 이상의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의료보험료의 12.6%를 요양보험료로 함.

## 2. 과세 관련 업무 신고

### 2.1. 세무서 신고

- 새로 창업한 농림업사업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창업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과세대상 파악을 위한 설문에 응답 후 제출해야 함.
  - 이 때 (농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고한 사업체에게는 조세번호(Steuernummer)가 교부됨.
- 과세대상 파악을 위한 신청서는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 혹은 농업컨설팅사무실 등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무사 혹은 농업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2. 농장의 통합가치 확정

- 자기 소유의 농장에서 자가경영을 시작하는 경우에 창업자는 농림업 자산 확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농장의 통합가치(Einheitswert)를 확정함.
  - 통합가치는 농지의 경영가치(Wirtschaftswert)와 농장가옥가치를 합산한 것임.
  - 여기서 경영가치는 거래가치가 아닌 수익가치로 평가된 농지의 가치이고, 농장가옥가치는 수익가치로 평가된 (농지 이외) 건축물 및 대지의 가치를 말함.
- 농장의 통합가치는 각종 부담금 크기 결정 및 농업경영체의 등급 구분의 근거가 되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토지세 산정의 근거가 됨.

- ② 수리조합 및 농지조합의 회비 결정의 근거가 됨.
- ③ 농업회의소 및 각종 농업직능단체의 회비 결정의 근거가 됨.
- ④ 부기 기장 의무의 경계 설정 및 평균요율에 의한 이윤(추정) 조사의 근거가 됨.
- ⑤ 「호프법」에 의한 농장상속 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상 크기 결정의 근거가 되고, 농장의 매도 및 양도 시 소규모 농림업경영체 경계 설정의 근거가 됨.
- ⑥ 농지임차료 및 경지정리사업의 교환가치 결정의 근거가 됨.

### 2.3. 부기 기장 의무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창업하는) 농업인은 부기 기장의 의무를 가짐.
  - 농림업의 매출이 연간 50만 유로가 넘거나
  - 농림업의 이윤이 연간 5만 유로가 넘을 때
  - 혹은 농지의 경영가치(임차지 포함)가 25,000유로 이상이 되는 경우
- 이러한 기준 내지 한도를 초과했는지에 대한 계산은 세무서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별지 L 내용 및 농장의 통합가치 결정 내용을 참고해서) 함.
  - 기장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세무서는 해당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기장 의무를 통지함.

#### (1) 부기 기장에 의한 이윤 파악

- 기장 의무를 갖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기 내용에 따라 이윤을 파악함.

#### (2) 초과잉여 계산에 의한 이윤 파악

- 부기 기장을 위한 법적 한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평균요율에 의한 이윤 파

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농업경영체의 이윤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대차대조표 없는 간편한 부기)에 따라 초과잉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파악이 이루어짐.

- 여기서는 정상적인 부기 기장과 결산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음.

### (3) 평균요율에 의한 이윤 파악

○ 부기 기장을 위한 법적 한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①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임차지 포함)가 20ha 미만이거나 ②양축규모가 50 가축단위 미만이거나 ③ 특수이용의 가치가 2,000마르크<sup>9</sup> 이하일 때, 이윤은 「소득세법」 제13a조에 따라 평균요율에 의해 파악할 수 있음.

- 여기서 정상적인 부기 기장과 결산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음.

### (4) 이윤 추정에 의한 파악

○ 앞서 언급한 이윤 파악의 모든 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체의 이윤 크기는 「부담금법(Abgabenordnung)」 제162조에 따라 세무서의 추정에 의해 정해짐.

## 3. 농업회의소 가입

○ 독일의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kammer)는 주(州)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인 자치기구로서 직업교육과 농업경영 지도상담을 고유업무로 하고,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림사업의 집행을 수탁업무로 하고 있음.

-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이 임의로 창설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주 정부에 의해 설치법이 제정되어야만 창설될 수 있음.

<sup>9</sup> 여기서도 이전 화폐단위인 마르크를 그대로 사용함.

- 독일의 지방농정은 농업청(Landwirtschaftsamt)<sup>10</sup>과 농업회의소라는 이원화된 체제로 유지되고 있음. 다시 말해 독일의 지방농정은 관리주체인 주 정부가 산하 행정기관인 농업청을 통해 직접 농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주 정부가 민간기구인 농업회의소에 농정업무를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2가지 형태를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개별 주 정부는 지방농정의 집행을 위해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현재 독일에서 농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서독지역 7개 주인데, 이들 주는 쉐레스비히-홀슈타인, 니데르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함부르크, 브레멘임.
- 농림업경영체의 창업 절차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농업회의소가 있는 니데르작센 주의 경우 창업농은 「농업회의소법(Gesetz über Landwirtschaftskammer)」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 여기서 회원자격은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토지소유자들은 농업회의소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들은 매년 10월 25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함.
  - 회비 크기 결정의 근거는 (유로로 환산된) 농장의 통합가치가 됨.
  - 니데르작센 농업회의소에서는 2012년 회비를 농장통합가치의 0.9%로 정하였음.

<sup>10</sup> 독일의 농업청 체제는 주 정부 산하 직속기구가 지방농정을 직접 담당하는 형태임. 즉 기초자치단체와는 독립적으로 지방농정이 수행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지원, 생산기술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그리고 농업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등이 주된 것임.

- 다만 농장통합가치가 1,0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함.
- 여기서 회비 크기 결정 및 징수 그리고 농업회의소로 전달 등의 사무를 관할 세무서가 담당함.

## 4. 축산경영체의 신고 및 등록

### 4.1. 수의검역보험 가입

- 말, 소, 돼지, 양, 염소와 가금류를 사육하는 영농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축거래령 (Viehverkehrsverordnung)」과 결부되어 있는 「수의검역법(Tierseuchengesetz)」에 따라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여기서 가축이 양축자의 소유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 어느 규모로 사육하는지, 가축사육이 토지경작이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 등의 사실은 별 상관없이 없는 내용에 속함.
- 가축사육에 대한 첫 번째 신고는 사육 개시 후 14일 이내에 신규 신고카드 작성 형태로 서면이나 온라인(online)으로 해야 함.
  - 이 때 신고하는 내용은 ①양축자의 이름 및 주소, ②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 ③사육하는 지역 및 위치, ④사육 개시일자가 됨.
  - 신고내용에 대한 변동사항도 변동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수의검역보험공단에 하는 첫 번째 신고는 각 시·군에 소재한 수의검역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음.
  - 이는 가축사육의 경우 수의검역소로의 신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동일한 내용이 수의검역소에 신고됨.

- 보험공단에 신고한 후 양축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신고한 후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보험료 계산은 가축사육규모로 하는데, 첫 등록 이후에는 매년 1월 3일을 조사일로 해서 이 때의 사육두수를 근거로 함.
  - 보험료 크기는 보험정관에 정해져 있는데, 그 단위로는 가축당 및 해당 연도(연도별)가 됨.
  - 또한 가축의 종류와 수의위생상태도 보험료 결정의 고려대상이 됨.
  
- 다만 소에 대한 사육정보는 생산이력제 때문에 수의검역보험공단이 아니라 가축생산이력정보시스템(Herkunftssicherung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Tiere, 약칭 HIT) 데이터은행이 관리하는데, HIT 데이터은행은 매년 1월 3~17일 사이에 소에 대한 사육정보를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알려줌.
  
- 2012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육계: 수(마리)당 0.0322유로
  - 말: 두당 3유로
  -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소: 두당 9유로
  -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소: 두당 15유로
  - 축산을 하는 경우 양축자에 대한 최소보험료가 있는데, 이에 따라 축산농가(경영체)는 최소 10유로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 4.2. 수의검역소 신고 및 등록

-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가축은 「가축거래령」에 따라 수의검역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함.
  - 신고대상 가축은 말, 소, 돼지, 양, 염소, 닭, 오리, 거위, 꿩, 빨닭, 자고, 비둘기, 칠면조, 메추라기임.

- 등록내용은 양축자의 이름과 주소, 축종별 연평균 사육두수, 가축의 용도, 축사 위치 등임.
- 관할 관청은 시·군 단위로 소재한 수의검역소가 되는데, 수의검역소는 축산업 신고의 지역창구(사무소)로 기능함.
- 수의검역소는 축산업등록정보를 받아 이를 농업회의소를 통해 주(州)농업데이터은행<sup>11</sup>에 전달함.
  - 신고된 사육정보는 중앙등록시스템에 의해 파악되어 양축자에게 교부된 축산업등록번호에 결부됨.
  - 축산업등록번호는 중앙등록시스템이 발부하여 수의검역소와 등록신청자에게 전달됨.
- 가축등록은 개체별로 등록하는 소와, 사육두수를 등록하고 축산업등록표시를 부착하게 하는 말, 돼지, 양, 염소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음.
- 소의 등록은 「EU 이사회 규정 1760/2000」에 따라 개정된 「가축거래령」의 추가규정(제24조)에 의해 2000년부터 생산이력제 방식으로 실시됨.
  - (1998년 1월 1일 이후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소는 각기 고유한 등록번호와 증명여권(Rinderpass)을 부여받고, 죽을(도살될) 때까지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이동할 때 여권을 지참함.
  - 양축자는 소의 등록번호와 증명서에 있는 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등록하고, 전출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7일 이내 신고해야 함.
  - 소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뮌헨에 소재한 가축생산이력정보시스템(HIT) 데이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음.

<sup>11</sup> 니테르작센 주에서는 축산통합정보시스템(Vereinigte Informationssysteme Tierhaltung, 약칭 VIT)에 전달됨.

## 5. 사료사업체 등록

- 사료의 생산 및 가공·유통에 관계하는 사업체(사료사업체)는 EU의 「사료 위생법(EU 이사회 규정 183/2005)」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함.
  - 관할 관청은 주별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이 됨.
- 사료사업체는 사료의 생산, 가공, 저장 또는 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체 모두를 말함.
  - 여기에는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를 생산·가공 또는 저장하는 사업체도 포함됨.
- 이 법령의 실시목적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이루기 위함임.
  - 이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사료사업체는 「EU 이사회 규정 183/2005」에 의거한 사료위생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함.
  - 따라서 추진절차는 등록과 의무사항 준수로 구성됨.

## 6. 농업경영체의 혜택

- 전술한 바와 같은 의무사항들을 이행한 경우에는 농림업경영체가 받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음.
  - 다시 말해 최소영농규모 이상되는 농림업경영체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과세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농업회의소에 가입하면 조세감면 등의 수혜대상이 됨.

- 축산을 하는 양축자는 4대 사회보험 중 해당되는 것과 수의검역보험에 가입하고 수의검역소에 경영체를 등록하면 수혜대상이 됨(농업회의소 가입 포함).
- 사료사업체는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의무지침을 준수해야 함.

## 6.1. 차량세 면제

- 농림업경영체는 「차량세법(Kraftfahrzeugsteuergesetz)」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유한 차량에 대해 차량세를 면제 받음.
  - 면세대상이 되는 차량은 트랙터와 차량트레일러 및 특수차량이 됨.
- 면세의 전제조건은 조세감면이 ①농림업경영체의 이윤추구에 기여하고, ② 면세대상차량이 전적으로 농림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 부업농의 경우에는 영농활동이 주업농과 비교할 정도가 될 때 조세감면이 이루어짐.
-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하고, 신청서류는 차량면허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음.

## 6.2. 유류세 감면

- 농림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유류세의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디젤유는 일부 감면되고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 기름은 전액 감면됨.
- 「에너지세법(Energiesteuergesetz)」 제2조에 따라 디젤유와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 기름의 에너지세율은 리터당 47.04센트임.

- 여기서 바이오디젤유와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는 「에너지세법」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율이 바이오디젤유는 리터당 18.596센트, 식물성 기름은 리터당 18.455센트가 됨.

- 농림업경영체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에너지세법」 제54조에 따라 디젤유의 경우 리터당 21.48센트의 감면이 이루어져 유류세가 리터당 25.56센트가 되고,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 기름은 전액 면제되는 형태가 됨.

### 6.3. 농업용 건축물 건설

- 독일의 전 국토는 개념적으로 건축이 자유스러운 정주공간(Siedlungsraum) 및 교통공간(Verkehrsraum)과 건축이 부자유스러운 자유공간(Freiraum)으로 대별됨.
  -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는 자유공간은 경지와 수자원, 동식물계 및 기상을 위해 중요하게 보전되고 기능적으로 재창출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 자유공간은 개발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과 주거계획 및 기타 전문계획을 통해 보전되어야 하고, 생태학적으로 효율적인 자유공간 연결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경관과 산림의 지속적인 분절은 가능한 방지되어야 하고 자유공간에 대한 토지요구는 제한되어야 함.
  - 농경지는 자유공간에 속함.
- 이와 같은 공간적 구분을 실행하는 수단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 허용영역(Innenbereich)으로 하여 건축상세계획(Bebauungsplan)이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하고, 건축이 부자유스러운 자유공간은 개발억제영역 (Außenbereich)

으로 분류하여 건축상세계획 이전 단계인 토지이용계획(Flächennutzungsplan)이 수립되게 함.

- 농경지는 개발억제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농림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함.
- 농업용 건축은 「건축법전」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일종의 특혜(Privilegierung)로 허가됨.
  - ① 공공기구들이 계획하는 농업용 건축에 반대하지 않고,
  - ② 충분한 개발여건이 보장되어 있고,
  - ③ 농업용 건축이 농림업경영체의 경영에 기여하며,
  - ④ 개발면적이 농림업경영체의 경영면적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할 때
- 건축허가청의 실무지침에 따르면, 농업용 건축은 ①농림업경영체가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②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③농림업경영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에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허가됨.
  - 주업농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허가청을 방문하여 건축계획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용 건축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군청에 함.
  - 농업용 건축에 대한 상담은 지역에 있는 농업회의소 지소에서 받을 수 있음.

## 6.4. 조세상 농림업 활동에 대한 우대

### 6.4.1. 조세상의 농림업 개념

- 앞서 서술한 내용은 농림업경영체로서의 의무적인 등록절차를 마치면 농림업경영체가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혜택에 대한 것임.
- 그런데 농림업경영체가 갖게 되는 조세상의 우대는 이외에도 더 있는데, 이것은 농림업경영체 인정으로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조세법상의 농림업’ 개념에 부합해야 주어지는 것임.
  - 이는 모든 농림업경영체의 활동이 전부 조세우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개념적으로 일반 ‘산업활동(gewerbliche Tätigkeit)’과 구별되는데, 농업경영체의 생산활동 중에도 ‘농림업 활동’에 속하지 않는 ‘산업활동’이 있음.
  - 농림업경영체의 활동 중 산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①법인경영체(자본회사)의 생산활동과 ②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이 됨.
- 조세법상의 농림업은 일차적으로 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 및 인적회사<sup>12</sup>의 활동이 되고, 축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되며, 이를 초과하면 전체가 ‘산업활동’으로 간주됨.
  - 처음 20ha까지는 ha당 10 가축단위(Vieheinheiten, VE) 준수
  - 그 다음 10ha까지는 ha당 7 가축단위 준수
  - 그 다음 20ha까지는 ha당 6 가축단위 준수

<sup>12</sup> 독일에서 인적 회사는 상법 상의 회사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어 있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그리고 민법 상의 회사를 말함. 인적 회사는 개인들의 결사체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 그 다음 50ha까지는 ha당 3 가축단위 준수
  - 더 이상의 사육지에는 ha당 1.5 가축단위 준수
-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은 농림업 생산활동이 기본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sup>13</sup>

## 6.4.2. 조세법상의 농림업에 대한 우대

### 가. 소득세

- 독일에서 소득세는 7가지 소득원천을 합산하여 부과함.
- 소득세 대상은 3가지 유형의 이윤과 4가지 유형의 잉여소득으로 이루어 지는데, 경영체 수입에서 도출되는 이윤은 ①농림업, ②일반 산업, ③자영업의 경제활동으로 유형화되고, 개인수입에서 도출되는 잉여소득은 ① 비자영노동, ②자본자산, ③임대사업, ④기타 수입으로 유형화됨.
- 소득세 부과에서 농림업 활동이 우대받는 부분은 특별공제에 있음. 농림업 공제는 개인의 연간소득이 30,7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670유로,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61,4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340유로를 공제함.

### 나. 산업세

- 산업세(Gewerbesteuer)는 지방세로서 산업활동을 하는 산업경영체에 부과되는 것임.
- 산업경영체는 회사의 법적 형태와 경제활동 성격에 따라 규정되는데, 법인인 자본회사는 사업성격에 상관없이 산업경영체가 되고, 인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경영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산업경영체 여부가 결정됨.

<sup>13</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미복·김수석(2011) pp. 95 참조.

- 즉,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 회사는 산업경영체가 아니지만, 농림업 이외 산업활동에서 얻은 연간수입이 10,300유로 이상이면 산업경영체로 분류됨.

○ 조세법상 농림업에 종사하는 농림업경영체는 산업세가 면제됨.

#### 다. 토지세

- 토지세(Grundsteuer)는 산업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방세로서 농지 및 임야에 부과되는 것과 여타 토지에 부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농지 및 임야에 부과하는 토지세는 농지 및 농장가옥의 수익가치로 산정되는 통합가치(Einheitswert)로 부과됨.

#### 라. 상속 및 증여세

- 농림업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을 농장의 통합가치(농지의 수익가치, 농장가옥 및 농업용 건축물의 수익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함.
  - 농지의 수익가치는 해당 필지의 최근 3년간의 순수익(표준소득) 평균치를 근거로 이를 5.5%의 이자율로 자본화(18.6배)하여 얻음.
  - 그런데 수익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거나 마이너스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최소가치가 설정되는데, 이 최소가치는 임차료를 자본화(18.6배)하여 얻음.
  - 수익가치가 최소가치보다 적을 때는 최소가치를 농지의 가치로 함.
- 농장가옥과 농업용 건축물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 후 10년 동안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 그러나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이들 건축물을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세함.

### 마. 부가가치세

- ‘매출세(Umsatzsteuer)’로 명명되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농림업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은 정규방식과 평균방식으로 구성됨.
- 먼저 정규과세방식을 보면,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통상 세율이 19%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과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은 7%임.
  - 여기서 농림업경영체가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판매한 농산물(임산물)의 부가가치세 차액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짐.
  - 즉, 판매한 농산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총액이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총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세무서에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음.
  - 예를 들어, <표 2-3>과 같은 경우에 해당 경영체는 300유로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표 2-3. 농림업 부가가치세 정규과세 정산방식

단위: 유로, %

구 분	원가	세율	세액	거래가액
영농자재 구입	15,000	19	2,850	17,850
곡물 판매	45,000	7	3,150	48,150
부가가치세 차액			300	

자료: 김미복·김수석(2011)

- 평균과세방식은 정규방식처럼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림업경영체가 판매하는 상품에 (평균화된) 10.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이 아닌 일반 농업경영체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서 정규방식과 평균방식 중 양자택일할 수 있음.
  - 그러나 평균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농림업경영체는 (인적회사가 아닌) 법인경영체, 임대인, 자가생산하지 않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됨.<sup>14</sup>

- 또한 매출이 소규모인 농림업사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지난해 매출이 17,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5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14 정규방식에는 부기기장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평균방식은 간이계산서 형태도 허용함.



## 제 3 장

---

### 정책적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 1. 개요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음.
  - 이러한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이를 이행하고 있음.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EU의 공동농업정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단일직불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국내에서 자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정책 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것임.

- 독일이 국내 농업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주된 프로그램은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공동임무(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약칭 GAK)인데,<sup>15</sup> 이 GAK에서 개별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농업투자지원사업(Agrarinvestitionsförderungsprogramm, 약칭 AFP)임.
  - GAK의 경우 GAK법이 있고 이 법에 따라 4년마다 GAK 지침계획이 새롭게 수립됨.
  - 현행 GAK 지침계획(2009~2012)에서는 GAK 사업에 연방이 재정의 50~70%를 부담함.
- 농업경영체가 농업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의 경영성(Wirtschaftlichkeit)과 경영주의 직업적 능력이 증빙되어야 함.
  - 경영주의 직업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개의 영농직업교육 수료가 요구됨.
- 그런데 AFP 등 국내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추가적인 전제조건이지 별도의 등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제와는 관련이 없다 할 수 있음.
- EU의 단일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은 비교적 복잡하고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아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 여기에는 EU 차원의 시스템 기본구조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 회원국인 독일이 구체화한 실행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제3장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임의등록시스템인 통합관리통제시스템을 EU 차원과 독일 내 차원으로 구별하여 분석토록 함.

---

<sup>15</sup> 공동임무는 지역개발 등 본래 주의 권한에 속한 사항 중 국민 전체에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연방과 주의 공동과업으로 정해 연방도 재정을 부담하여 그 추진을 촉진하는 것임. 공동임무는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과 ‘지역경제구조의 개선(GRW)’의 두 가지가 있음.

## 2. EU의 통합관리통제시스템(IACS)

### 2.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목적

- 1992년 직접지불제도 중심의 공동농업정책의 개편과 더불어 직불제의 효과적 관리와 회원국들 간의 형평성에 부합한 집행을 위해 통합관리통제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이 도입됨.
  - 1992년의 EU 농업정책 개혁의 핵심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시장개입을 통해서 보장해 주던 제도적 가격들의 수준을 낮추고,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농업경영체 단위로 재배면적 또는 가축두수에 비례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 것임.
  - 정부 매입이라는 시장 조절 방식이 아닌 대규모의 공공 재정이 직접적으로 개별 농업경영주에게 이전되는 직접지불제도의 성격상, 제도에 정해진 대로 정당한 지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됨.
- 도입 초기에는 곡류 등 작물 관련 3개 프로그램과 쇠고기 등 가축 관련 3개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으나, 이후 어젠더 2000(Agenda 2000) 농정개혁에 따른 다면수행조건(cross compliance), 단일직접지불제(Single Payment Scheme)의 관리 부분도 IAC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

### 2.2. 1992년 도입된 제도의 기본구조<sup>16</sup>

- IACS는 다음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됨.

<sup>16</sup> EU(2001) 참조.

- ① 농업경영체(holding)의 지원신청 내용을 기록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 ② 농지의 위치식별체계
  - ③ 동물의 식별 및 등록체계
  - ④ 지원신청
  - ⑤ 행정적 관리와 현장검증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각 농업경영체(holding)별 신청서의 내용을 기록하며 최소 과거 3년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참조가능해야 함.
- 농업경영체는 한 회원국 안에서 동일한 한 명의 농업경영주(farmer)에 의해 관리되는 생산단위(production unit) 모두를 통합한 것임.
  - 위의 농업경영체 정의에서 사용된 농업경영주란 용어는 자연인 혹은 법인(legal person)등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EC 역내에 경영체를 둔 개별 농업경영주를 말함.
  - 농업경영주는 자연인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사실의 독자적인 경영결정단위(농기업)를 일컫는 것임. 또한 ‘농업경영체’는 그러한 하나의 농업경영주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구체적 생산단위(객체)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임.
  - 즉 하나의 농업경영주는 하나의 농업경영체가 대응하며 그 하나의 농업경영체에는 다수의 생산장소(사업장)가 포함될 수 있음.
- 농업 필지(agricultural parcel)의 식별체계는 지도, 농지등록서류(land registry document) 기타 혹은 기타 지도체계에 근거함.
- 여기서 농업용 필지란 단일한 작물을 단일한 농업경영주가 경작하는 연속적인 구역(area of land)을 말함.
-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각 농업 매년 1건의 ‘경지’ 관련 지원 신청을 해야 함. 여기에는 지원대상 필지, 휴경 지원 대상 필지, 그리고 휴한 중인 필지를 표시함.

-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하는 필지별로 면적과 위치를 표시하여 농지식별 체계 내에서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관리기구를 통해 우선 행정적 대조조사, 현장조사 및 항공 및 인공위성 촬영을 이용한 검증이 이루어짐.
  - 행정적 대조조사는 동일 경지에 대하여 이중 지원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동물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출생, 이동, 도축을 올바르게 신고한 동물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임.
  - 행정적 대조조사에서 전산화된 각종 데이터베이스(농업용 필지 관련 데이터, 비농업용 필지 관련 데이터)가 활용됨.
- 현장조사는 동물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건의 10%, 경지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 건의 5% 이상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지역에서 상당한 부정확성(irregularity)이 발견된 경우 당년도와 그 다음 해에 그 지역에서의 현장조사 비율을 증가시켜야 함.
  - 현장조사의 대상농가는 무작위 추출과 위험분석(risk analysis)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출하며, 그 중 위험분석은 지원액수, 농지지편의 수, 가축의 수, 전년 대비 변화, 신청액수와 신청한도의 근접성 등에 기초함.
- 신청내용과 조사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제재가 가해짐.
  - 조사결과 면적이 신청내용보다 더 넓은 경우는 신청내용을 적용함.
  - 조사결과 면적이 신청내용보다 더 적은 경우, 단순감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착오율 3%(착오면적 2ha) 이상 20% 미만이면 2배 감액하며, 20% 이상이면 면적 관련 지원에서 완전 배제함.

## 2.3. 단일직접지불제의 도입과 IACS의 강화

### 2.3.1.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

- EU는 2003년 재차 농업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단일직불제는 그 핵심을 이루는 제도임.
- 2003년 개혁의 전체적 골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sup>17</sup>
  - 생산으로부터 분리된(decoupled) 단일직불제도의 도입, 단 생산포기를 막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생산과의 연계요소를 부분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단일직불제는 환경, 식품안전, 동물 및 식물 건강, 동물복지 기준, 농업 및 환경적 측면에서 농지의 온전한 유지 등에 연계됨(cross compliance).
  - 농촌개발정책의 강화
  -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불의 감소(modulation)를 통한 농촌개발정책 재원의 확보
  - 재정규율 제도를 통한 농업재정 한도의 준수
  - 공동농업정책(CAP)의 시장정책 수정
- 단일직불제의 핵심은 직접지불과 농업경영주의 생산에 관한 결정을 이전에 비해 강력히 차단함으로써 과잉생산과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이전의 보상 직접지불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작물의 당년도 재배면적에 연계되므로 생산을 유지,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이것이 과잉생산과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그밖에 EU는 단일직불제 도입의 이유로 농업경영주의 생산결정 상의 자율 보장, 환경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진작, 신청 및 행정절차

<sup>17</sup> Council Regulation (EC) No 1782/2003 of 29 September 2003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direc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의 단순화, WTO 협상에서의 입장 강화 등을 들고 있음.

○ 단일직불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자격은 각 회원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주에게 있음.
- 지원 수급권(payment entitlement)은 기본적으로 각 농업경영주가 2000~2002년 사이에 지급받았던 직접지불액수를 지불대상 면적으로 나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짐.
- 실제지급은 농업경영주가 보유하고 있는 수급대상 면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급대상 면적은 영년생(永年生) 작물과 임야를 제외한 모든 농경지를 포함함.
- 농업경영주는 영년생 작물, 과일, 채소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 받을 수 있음.
- 지급을 받기 위해서 농업생산을 할 의무는 없으나 농지를 영농조건에 부합되고 환경친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도 19개의 EU 지침과 규정에 명시된 법적 관리 의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를 준수해야 함.
- 수급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농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음.
- 각 회원국은 농산물 시장의 교란이나 생산의 포기가 우려되는 경우 품목 특정적 직불을 일정비율로 계속할 수 있음.
- 단일직불제 예산은 2005년 3%, 2006년 4%, 2007년 이후 5% 감액하여 운용함.

### 2.3.2. 강화된 IACS 내용

○ 2003년의 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다면수행조건, 재정적 보조금 조정(modulation), 단일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IACS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의 구성으로 수정·강화됨.

- ① 농업경영체의 지원신청 내용을 기록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 ② 농지의 위치식별체계
  - ③ 지원 수급권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체계
  - ④ 지원신청
  - ⑤ 통합관리 시스템
  - ⑥ 지원신청을 하는 농업경영주를 식별할 수 있는 단일등록체계
- 2003년 이전의 IACS와 비교해 볼 때 ③의 수급권 식별과 등록, ⑥의 농업경영주 식별등록이 새로운 요소임.
- 단일직불제는 고정된 과거시점의 직접지불 수급실적이 수급권의 기초가 되며 이 수급권이 농업인 간에 양도가 가능하므로 이 수급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2003년 이후 IACS의 중요한 과제가 됨.
  - 효율적 관리와 중복 신청(지불기관이 2개 이상인 회원국에서 문제가 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주를 식별하는 단일 체계의 구축을 추구하게 됨.
- ③과 ⑥ 이외의 요소들도 제도의 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강화 혹은 변화됨.
- 전산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경영체의 지원신청을 기록하며 2000년 이후의 신청기록과 즉각적으로 참조가능해야 함.
  - 농업 필지의 식별체계는 기준 필지(reference parcel)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때 기준필지란 회원국의 GIS에 등록되어 유일하게 식별가능하게 지리적으로 경계지워진 구역을 말함.
- 지원수급권의 식별과 등록을 위한 체계는 수급권의 확인과, 지원신청과 농지식별체계와의 대조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과거 최소 3년간의 자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참조가능해야 함.
- 전자등록체제로 수급권자, 가액, 수급권 성립일, 최근 수급권 이용일, 출

처(구매, 임대, 상속 등), 수급권의 종류(휴경수급권, 특별한 조건을 수반하는 수급권인지 여부), 지역적 제한 등을 수록해야 함.

- 매년 각 농업경영주는 IACS가 관리하는 직접지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경영체의 모든 필지, 수급권의 수효와 액수, 기타 해당 규정이나 회원국이 정하는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구체적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며 특히 농업경영주의 신원, 지원대상 제도, 수급권의 식별, 경영체의 모든 농업필지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자세한 사항, 면적, 위치(필요한 경우 용도와 관개 여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 회원국 정부의 재량으로 매년의 신청서는 전년도 대비 변화만을 표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
  - 회원국 정부는 작년도 지급 농지에 기초하여 사전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양식을 배포하며, 그 농지들을 표시한 지도를 첨부하여 제공해야 함.
  
- 농업경영주 식별체계는 동일한 경영주가 제출하는 모든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신원을 정확히 단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농업경영주 식별체계는 IACS가 관리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함.<sup>18</sup>
  
- 회원국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주가 규정된 다면수행조건(cross compliance)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특히 조사대상농가의 선정방법,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두어야 함.

<sup>18</sup> Commission Regulation 796/2004 제5조

## 2.4. 2009년 단일직불제 및 IACS의 개편

### 2.4.1. 단일직불제 개편 내용

- EU는 단일직불제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형태로 2009년 단일직불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데, 이 때 IACS의 내용도 일부 수정됨.
  - 이를 실행하는 법규가 「EU 이사회 규정 73/2009」로 제정되어 기존의 「EU 이사회 규정 1782/2003」을 대체함.<sup>19</sup>
- 2009년에 수정된 단일직불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추진배경 및 목표를 가짐.
  - 2003년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이후 EU는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단계적으로 지양하고 이를 농업경영주에게 직불금을 주는 형태의 농업경영체 지원 체제로 통합하고자 함.
  - 직불금은 소득지원의 틀 내에서 경영주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인데, 지원금 중의 일부는 여전히 생산과 연계된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불금은 생산과 분리되고 ‘농업경영체 직불규정(Betriebsprämienregelung)’으로 명명되는 단일직불규정으로 집행됨.
  - 2009년에 수정된 단일직불제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농업경영체 지원 체제로 통합하고 농업경영체 지원규정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개편된 단일직불제의 내용 규정을 주된 목표로 하는 「EU 이사회 규정 1782/2003」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sup>19</sup> 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of 19 January 2009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direc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 ① 직접지불에 대한 공동규정
  - ② 농업경영주를 위한 소득지원규정(단일직불규정)
  - ③ 새로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들<sup>20</sup>의 농업경영주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단순화된 소득지원규정(단일경지지불규정)
  - ④ 쌀, 사료용 감자 등 특별품목<sup>21</sup>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주를 위한 지원규정
- 여기서 단일직불제(SPS)와 내용적으로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앞의 두 가지, 즉 ① 직접지불에 대한 공동규정과 ② 단일직불규정임.

#### 가. 직접지불의 공동규정

○ 먼저 직접지불에 대한 공동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직접지불은 다면수행조건의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함. 다시 말해 농업경영주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과 안전, ②환경, ③동물보호의 다면수행조건을 이행해야 함.
  - 농업경영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삭감되거나 없어짐.
- (2) 직불금 운용규정(modulation)과 관련해서는 먼저 영농규모와 직불금 크기 관계가 규정되는데, 여기서는 영농규모 증가에 따른 지급율의 누진적 감소가 이루어짐.
  - 5천 유로를 초과하는 직불금은 해마다 지급률이 감소됨.
  - 감소비율은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10%가 되도록 함.

<sup>20</sup> 여기서 말하는 신규 회원국은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레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의 12개국임.

<sup>21</sup> 단일직불제와 별도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특별품목으로는 쌀, 사료용 감자, 단백질작물(protein crops), 견과류, 종자, 면화, 사탕(수수 및 무), 과일 및 채소, 양·염소고기 및 쇠고기 등이 있음.

- (3) 직불금의 자금조정 규정에 따르면, 농촌개발 프로그램,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재생에너지, 수자원 경영 및 생물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에서 지원하게 함.
- (4) 농업인들은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올바른 영농 및 친환경 영농에 필요한 지침들에 대해 컨설팅을 받기 위하여 개별 회원국들이 설치한 영농상담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음.
- (5) 직불금은 전액이 수령자에게 지급되며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사이에 일시불 혹은 2차례 분할 지급됨.  
 - 집행위원회는 전도금 지급을 허용할 수 있음.  
 - 직불금 지급의 전제조건을 인위적으로 창출한 농업경영주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 (6) 직불금의 집행과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IACS를 설치·운영함.  
 - IACS의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함.

#### 나. 단일직불규정

○ 다음으로 단일직불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단일직불규정(농업경영체직불규정)은 농업경영주로 하여금 그의 생산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게 하는 것임.  
 - 이 규정의 최우선 목표는 농업경영주에게 정규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임. 다시 말해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생산과 결부되지 않은 소득보조를 받음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자신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

- 여기에 더하여 단일직불규정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2) 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규정을 통해 개별 회원국들이 단일직불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을 매년 발표함(회원국 상한).
  - (3) 회원국들은 신규 농업경영주와 특별한 처지에 놓인 경영주들, 그리고 구조개혁이나 발전프로그램과 결부된 지역에 있는 농업경영주들에게 지원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유보금을 만들어 둠(회원국 유보액).
  - (4) 단일직불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주는 지원대상 경지면적의 신고로 생기는 지원수급권을 사전에 보유해야 함(지원수급권).
    - 지원수급권은 특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
  - (5) 지원수급권은 기본적으로 개별 농업경영주가 제도 수립과 관련된 역사적 시기, 즉 2000~2002년 사이에 지급받았던 직접지불금의 총액에 기초하며, 수급권의 크기는 이를 지불대상 헥타르 면적으로 나눈 액수로 정해짐(역사적 적용).
    - 이러한 ‘역사적 적용’ 이후에 단일직불제에 들어온 경우 같은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수급권 산정방식의 적용이 가능함.
  - (6) 회원국들은 단일직불을 지역 차원으로 배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이 때 단일직불금의 지역적 상한을 정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 속한 경영주들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실시함(지역적 시행).
    - 이 경우 지원수급권의 크기는 지역단위 직불금 총액을 제도 적용 첫 해에 신고한 헥타르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도출함.
    -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수급권 크기는 단위당 액수가 모두 동일하게 됨.

- (7) 농지의 경작 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단일직불제의 부분적 시행을 결정할 수 있음(부분적 시행).
- 이런 경우에 회원국들은 (단일직불제를 보완하는 형태의)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이 규정의 전반적인 적용은 2012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양 및 염소 사육과 어미소 사육 영역에서만 적용됨.
  - 부분적 시행은 특정지역에서 경작포기를 막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

#### 2.4.2. IACS 개선

- 「EU 이사회 규정 73/2009」에 나타난 IACS 운용규정은 기본적으로 「EU 이사회 규정 1782/2003」과 동일함. 다만 2009년의 이사회 규정이 다면수행조건의 준수를 강화함에 따라 IACS에도 다면수행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 다면수행조건의 준수와 관련하여 2009년에 수정 및 신규로 추가된 IAC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올바른 영농 및 친환경적 영농에 대한 기본적 요구를 특정 연도의 특정 시점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위반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경영주의 행위 또는 태만에 기인하는 경우, 직불금의 총액이 삭감되거나 지불대상에서 제외됨(이사회 규정 73/2009, 제23조 제1항).
    - 이 규정은 위반이 농지를 양도 또는 양수받은 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여기서 ‘양도 또는 양수’는 경작을 중단하는 농지를 승계받는 모든 과정을 의미함.

- (2) 회원국들은 삭감 또는 삭제되는 직불금이 농업경영주별로 연 100유로 이하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사회 규정 73/2009, 제23조 제2항).  
- 또한 회원국은 농업경영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 (3) 삭감 또는 삭제되는 직불금의 집행규정에서는 위반의 강도, 규모, 지속기간 및 빈도가 고려되어야 함(이사회 규정 73/2009, 제24조 제1항).
- (4) 태만의 경우 삭감은 최고 5%로 하고 반복될 때는 최고 15%로 함(이사회 규정 73/2009, 제24조 제2항).  
- 회원국들은 강도·규모·지속기간에 의한 위반이 경미하고 그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삭감하지 않게 할 수 있음.  
- 다만 이 위반이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것을 고려하지 않음.
- (5) 의도적 위반인 경우에는 20%를 넘지 않는 삭감 또는 지원 규정에서 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함(이사회 규정 73/2009, 제24조 제3항).  
- 그리고 제재기간은 한 해 또는 다년간으로 할 수 있음.
- (6) 어떠한 경우에도 삭감 또는 삭제되는 총액이 직불금의 총액을 넘어서는 안 됨(이사회 규정 73/2009, 제24조 제4항).
- (7) 삭감 또는 삭제로 발생한 직불금은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으로 환수됨. 회원국들은 이 중 25%를 보유할 수 있음(이사회 규정 73/2009, 제25조).
- IACS의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단일직불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EU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새로 추가된 「EU 이사회 규정

73/2009」 제26조에서는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규제지역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업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임업프로그램 및 와인 관련 프로그램 수행 시 실행 시스템이 IACS와 호환이 되게 하여 IACS의 데이터 및 시스템을 활용하게 함.

### 3. 독일의 InVeKoS

#### 3.1. IACS 체제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 IACS의 구성요소 중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함.
- 1992년 IACS의 출범 당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03~2004년 단일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EU의 법령(이사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회원국에서 이를 제도화하게 됨.
  - EU의 모법은 2003년에 제정된 「EU 이사회 규정 1782/2003」 인데, 이것에 상응하는 독일 국내법은 2004년 7월 21일에 제정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실행법(Gesetz zur Umsetzung der Reform der Gemeinsamen Agrarpolitik)」 임.
  - 그런데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실행법」은 단일한 법이 아니라 3가지 법<sup>22</sup>의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법은 「IACS 데이터법(InVeKoS-Daten-Gesetz)」이고, 이를 실행하는 시행령은 「지원규정 및 통합행정통제시스템 이행령(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up>22</sup> 「단일직불 실행법(Gesetz zur Durchführung der einheitlichen Betriebsprämie)」, 「다면수행 조건 이행 규율법(Gesetz zur Regelung der Einhaltung anderweitiger Verpflichtungen durch Landwirte im Rahmen gemeinschaftlicher Vorschrift über Direktzahlungen und sonstige Stützungsregelungen)」, 「InVeKoS 데이터법(InVeKoS-Daten-Gesetz)」으로 구성되고, 이 법들은 각각의 시행령을 갖고 있음.

Stützungsregelungen und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s, 약칭 InVeKoSV)」으로 구성됨.<sup>23</sup>

-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IACS, 즉 InVeKoS 체제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음.
  - 「InVeKoS 데이터법」의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경영주에 관한 기본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됨.
- 축산경영체를 포함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등록은 임의등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EU의 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조건부 의무제로 운영되고 있음.
- 독일에서 농업행정은 각 주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도 주별로 관리되고 있음. 등록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먼저 각 주에서는 농업경영체의 데이터를 등록·관리하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Adressdatenstelle)’이 지정됨.<sup>24</sup>
- 등록절차는 농업경영체들이 지역(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것이 ‘데이터 등록기관’에 등록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임.

<sup>23</sup>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농업지원을 위한 공동규정에 따른 통합행정통제시스템 내에서의 데이터 운용과 활용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von Daten im Rahmen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s nach den gemeinschaftlichen Vorschriften für landwirtschaftliche Stützungsregelung, 약칭 InVeKoSDG)」임.

<sup>24</sup> 독일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담당하는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은 별도로 신설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농업 관련 정보담당 기구에 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임. 니더작센 주의 경우 기존의 축산 관련 데이터 관리기구인 사단법인 축산통합정보시스템(Vereinigte Informationssysteme Tierhaltung, VIT)에서 이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인적사항 데이터의 등록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체 주소: 경영체 이름, 경영주 이름, 경영체의 법적 형태,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 등록 사유: 농장양도계약에 의한 조기양도, 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전체농장 양도, 농장의 분할, 경영체 창설
  - 법인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경영체)을 통합하는 통합경영체를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에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같이 기재함.
  - 등록 사유가 발생한 시점
  - 영농유형: 축산을 포함한 농업, 축산 없는 농업, 취미농업, 도축업, 가축유통업, 정책프로그램 대상 농업
  - 가축(소, 돼지, 양, 염소, 말, 가금) 사육두수와 수의위생단위
  
- 농지 데이터는 이른바 ‘토지식별번호(Flächenidentifikator, FLIK)’ 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FLIK는 경지대장(Flurbuch)<sup>25</sup> 상의 최소단위인 필지(Flurstück) 중에서 식별번호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부여하는 일종의 지번에 해당함.
  - FLIK는 6자리의 문자와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6자리 문자는 2자리의 국가코드(DE)와 2자리의 주(州) 코드, 그리고 농업 IACS를 의미하는 LI로 되어 있고, 10자리 숫자는 주별로 재량에 따라 임의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음.
  - FLIK 신청은 경작자가 IACS를 관할하는 관청(농업회의소 혹은 농업청)에 하고,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토지등기소(Katasteramt)의 경지대장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이루어짐.

<sup>25</sup> 독일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토지대장(Grundbuch)과 별도로 경지의 일반적 활용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된 경지대장이 있음. 필지 또한 소유필지(Grundstück)와 구별되는 경작필지(Flurstück)가 있음.

- FLIK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경작하는 필지 각각을 한꺼번에 기재하는데, 필지별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지가 위치한 계마인데 및 토지행정상의 구역
  - 경지대장 상의 필지 번호
  - 해당 필지의 면적
  - 해당 필지 중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 토지의 이용(작목) 현황\*26
  - 토지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 농업경영체 등록 사유에서 농장양도계약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등록에는 축산의 경우에만 기존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 농장분할에 의한 등록에는 신규로 등록하는 경영체에게만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원 경영체는 기존의 등록번호를 유지함.
  -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농업경영체가 신고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국가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15자리(국가번호 3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구성항목은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2	7	6												
---	---	---	--	--	--	--	--	--	--	--	--	--	--	--

<국가번호>   <주 번호>   <군 번호>   <계마인데 번호>   <경영체 개별번호>

-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므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확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26 \* 표시 항목은 주(州)에 따라 제외되기도 함.

- 독일에서 InVeKoS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이와 같은 EU 규정에 의한 경영체의 인력 및 농지정보 등록과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에 의한 축산 정보 등록을 종합하여 구성함.

그림 3-2. 독일의 InVeKoS 농업경영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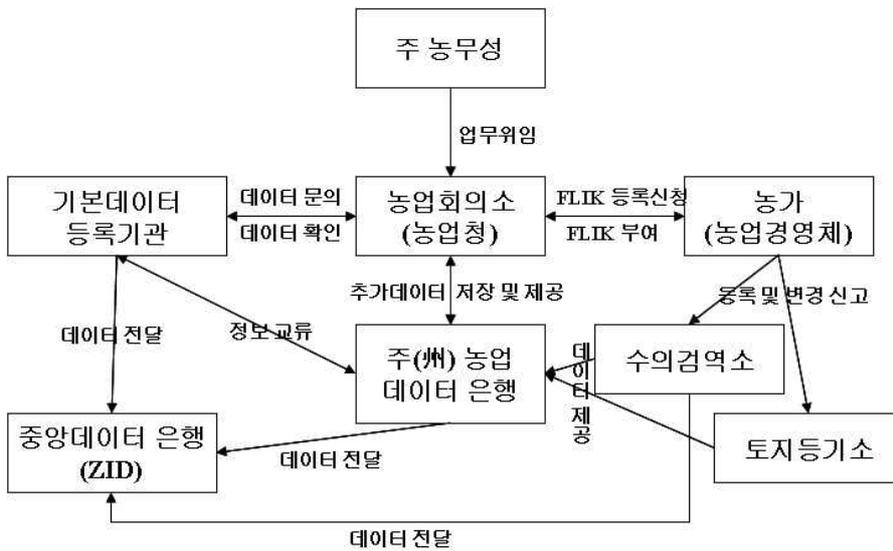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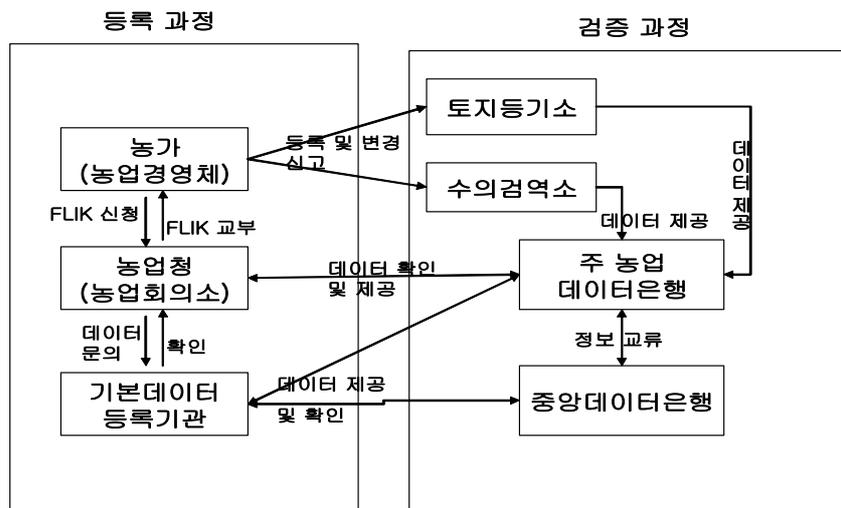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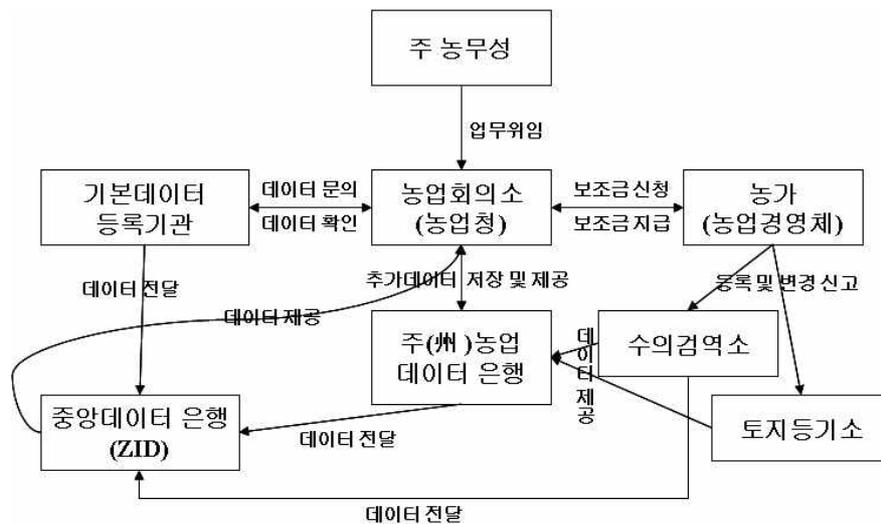


그림 3-3. 독일의 농업경영체 데이터 등록과정



- 요컨대 독일의 InVeKos는 농업경영체의 인력정보와 농지식별시스템(FLIK) 및 축산업등록제를 활용하여 EU의 직접지불금을 통합적으로 배분·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음.
  - 개별 농업경영체가 지역에 있는 농업청(농업회의소)에 EU의 직불금을 신청하면, 이 신청서의 내용이 ‘기본데이터 등록기관’을 통해 검증됨.
  - 농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등록한 FLIK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축산에 대한 것도 기존의 등록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신청서 내용이 시스템상 하자가 없다고 평가되면, 해당 경영체에 직접지불 보조금이 지급됨.

그림 3-4. 독일의 단일직불금 관리체제



- 시스템에 의한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함.

### 3.2. 산란계 경영체 등록

-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별도로 산란계 경영체가 등록하는 산란계 경영체 등록이 있음.
  - 이 등록은 EU가 산란계 경영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국내 법인, 「산란계경영체등록법」(Legenhennenbetriebsregistergesetz)으로 추진되는 축산경영체 등록임.
- 산란계경영체등록은 계란의 표시를 위해 실시하는 것(일종의 생산이력)으로서 원칙적으로 350수 이상의 산란계를 가진 경영체를 등록대상으로 함.
  - 350수 미만이라도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등록할 수 있음.
- 등록조건으로 특정 산란계 종(Gallus gallus)이어야 하고, 방사조건을 갖춘 계사가 설치되어야 하며, 계사별 계란의 생산조건이 동일해야 함.
- 등록에 조사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영체의 이름과 주소
  - 경영주의 이름과 주소
  - 경영체의 계사 수
  - 개별 계사의 위치
  - EU 지침에 따른 개별 계사의 양계시스템
  - 계사별 책임자 이름과 주소
- 산란계경영체등록에서는 경영체에 대한 등록과 개별 계사에 대한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짐.
  - 등록된 경영체에는 경영체번호(Betriebsnummer)와 개별 계사 사항까지 표시하는 산란계등록번호(Kennnummer)가 부여됨.
  - 경영체번호는 6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앞의 두 자리는 독일의 연방주 번

호입.

- 폐업한 경우 등록 데이터는 3년 동안 보존하다 그 이후 삭제함.
  - 12자리의 산란계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되어 있음.
    - 맨 앞에 EU 지침에 의한 양계시스템 유형을 나타내는 숫자
    - 다음에 EU 내의 회원국가를 나타내는 알파벳 표시
    - 그 다음 6자리 경영체번호
    - 마지막으로 계사수를 나타내는 계사번호로 되어 있음.
- (예시: 1-DE-1212341)

그림 3-5. 독일의 산란계등록번호 체계

1	-	D	E	-	1	2	1	2	3	4	1
<양계유형>		<국가번호>			<경영체 번호>						<계사수>



## 제 4 장

---

###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1.1. 개요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다른 산업경영체와 세계집행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임.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 또는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마친 농업경영체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의무등록이 아닌 임의로 등록하는 절차가 이루어짐. 하지만 임의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들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하고 있음.

## 1.2.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하나의 정상적인 농업경영체, 즉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
- 이러한 의무적 등록과정은 모든 농업경영체(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됨.
  - 다시 말해 취미농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사업체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의무만 있지만, 최소영농규모를 넘어선 주업농 및 부업농은 해당되는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새로 창업하는 농업경영체가 취미농이 아닌 온전한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하며 축산경영체의 경우 축산업등록을 해야 함.
- 농업 관련 4대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농업연금보험, 농업의료보험 및 농업요양보험을 말함.
  -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최소영농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 다시 말해 취미농이나 소규모 사업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나머지 보험들은 최소영농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는 사업체들만 가입하게 함.
-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은 ①창업 후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과 ②농장의 가

- 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한 사업체에게는 조세번호가 교부됨.
  - 세무서는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농장의 통합가치를 확정함.
-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또는 이윤을 산출하거나 농지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농업인)는 부기 기장의 의무를 갖게 됨.
- 이는 ①농림업의 매출이 연간 50만 유로가 넘거나, ②농림업의 이윤이 연간 5만 유로가 넘을 때, ③또는 농지의 경영가치(임차지 포함)가 25,000유로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함.
  - 기장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 세무서는 해당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기장 의무를 통지함.
- 다음으로 농업회의소가 있는 주에서는 창업농이 「농업회의소법」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 여기서 회원자격은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농업회의소의 회원 중 토지소유자들은 농업회의소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농장의 통합가치가 되고, 회비의 징수는 관할 세무서가 담당함.
- 축산업을 하는 양축자는 수의검역보험에 가입하고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함.
- 수의검역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가축은 말, 소, 돼지, 양, 염소와 가금류가 되는데, 여기서 보험가입은 가축이 양축자의 소유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 어느 규모로 사육하는지, 가축사육이 토지경작과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 등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짐.
- 수의검역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가축은 「가축거래령」에 따라 수

의검역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함.

- 등록내용은 양축자의 이름과 주소, 축종별 연평균 사육두수, 가축의 용도, 축사 위치 등임.

○ 관할 관청인 수의검역소는 축산업등록정보를 받아 중앙등록시스템에 전달하고, 중앙등록시스템은 축산업등록번호를 발부하여 이를 수의검역소와 등록신청자에게 전달함.

- 가축등록은 개체별로 등록하는 소와, 사육두수를 등록하고 축산업등록표를 부착하게 하는 말, 돼지, 양, 염소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사료의 생산 및 가공·유통에 관계하는 사업체(사료사업체)는 EU의 「사료위생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함.

- 사료사업체는 사료의 생산, 가공, 저장 또는 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체 모두를 말하는데,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를 생산·가공 또는 저장하는 사업체도 포함됨.

○ 사료사업체 등록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사료사업체는 EU 규정에 의거한 사료위생지침을 준수해야 함.

○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기 위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한 경우에 농업경영체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먼저 농업경영체는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세를 면제받고, 유류세도 면제 또는 감면 받음.
- 또한 농업경영체가 주업농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억제영역인 자유공간에 농업용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 그리고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조세법상의 농림업’에 해당하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 중 조세법상의 농림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법인경영체(자본회사)의 생산활동과 ②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이 됨.
  
- 조세법상의 농림업이 갖는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요약할 수 있음.
  - 소득세 부과에서 농림업 활동에 대해 특별공제로 우대함.
  - 조세법상 농림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는 산업세가 면제됨.
  - 농지 및 임야에 부과하는 토지세는 농지 및 농장가옥의 수익가치로 산정되는 통합가치로 부과함.
  - 농림업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을 농장의 통합가치로 산정함.
  - 농산물에 대해 낮은 일반 부가가치세율(19%)보다 낮은 세율(10.7%)을 적용함.

### 1.3.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 등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이외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이행해야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자격요건이 됨.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EU의 공동농업정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지의 이용정보 등을 등록하는 통합관리통제시스템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국내에서 자국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정책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것임.

- 독일이 국내 농업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주된 프로그램은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공동임무(GAK)인데, 이 GAK에서 개별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농업투자지원사업(AFP)임.
- 농업경영체가 농업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의 경영성과 경영주의 직업적 능력이 증빙되어야 함.
  - 경영주의 직업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개의 영농직업교육 수료가 요구됨.
  - 그런데 AFP 등 국내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추가적인 전제조건이지 별도의 등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제와는 관련이 없다 할 수 있음.
- EU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EU 규정에 의거한 통합행정통제시스템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경영체가 이 IACS에 등록하는 것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함.
- 독일은 EU 규정에 따른 단일직불제 실시 및 IACS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04년 12월부터 독일식 IACS 시스템인 InVeKoS를 운영하고 있음.
-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의 인력정보와 토지(이용)정보를 등록하는 것임. 다시 말해 농업경영체의 인력 현황과 농지를 이용한 영농활동 내역을 등록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농지정보는 필지별로 ‘토지식별번호(FLIK)’를 부여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음.
  - 여기서 FLIK 신청은 경작자가 InVeKoS 관리청에 하고,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는 토지등기소의 경지대장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InVeKoS는 경종농업경영체뿐 아니라 축산경영체를 포함한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축산경영체에 대한 등록은 독일 고유의 축산업등록제를 InVeKoS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시 말해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해당하는 축산업등록제를 InVeKoS가 활용하는 형태가 된다 할 수 있음.
- 독일에서 농업행정은 각 주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InVeKoS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도 주별로 관리되고 있음.
  - 등록절차는 농업경영체들이 지역(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청이나 농업회의소 지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것이 InVeKoS 관리기관에 등록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임.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 국가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15자리(국가번호 3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구성항목은 국가번호, 주번호, 군번호, 게마인데 번호, 농업경영체 개별번호가 됨.
- 요컨대 독일의 InVeKoS는 농업경영체의 인력정보와 농지식별시스템 및 축산업등록제를 활용하여 EU의 직접지불금을 통합적으로 배분·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음.
  - 개별 농업경영체가 지역에 있는 농업청(농업회의소)에 EU의 직불금을 신청하면, 이 신청서의 내용이 관리기관을 통해 검증되고, 신청서 내용이 시스템상 하자가 없다고 평가되면, 해당 경영체에 직불금이 지급됨.

## 2. 시사점

-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중 보다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독일 고유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해당하는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임. 이것은 농업경영체가 조세법상의 농업사업체로 인정받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 이 중 농업인에 대한 규정은 ①1,000m<sup>2</sup>(300평)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음. 이것은 농업경영체의 요건으로 지나치게 간단하고 확인이 어려운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으로 문제가 있음.
- 반면에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의 인증요건이 명확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경영체의 안정과 사업자 신고를 통한 ‘정상적’ 사업체의 면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업경영체 인증요건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 독일의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등록에 해당하는 등록제는 현재 우리나라도 구비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서는 제도화된 등록제가 구체적인 정책사업과의 연결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독일의 경우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각종 직불사업, 특히 EU의 단일직불제를 추진하는 집행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각종 직불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직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문헌

- 김미복, 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등. 20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등. 2009.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등. 2006.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 등.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상곤 등. 2010.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민국 등. 2011.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uswertungs- und Informationsdienst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aid). 1998. Kennzeichnung und Registrierung von Rindern. Bonn.
- aid. 1999. Das Herkunftssicherungs- und Informationssystem für Rinder. Bonn.
- aid. 2006. Management der Zahlungsansprüche in der Zentralen InVeKos-Datenbank. Bonn
- EU. 2001. "Special Report on the Audit of the EAGGF-Guarantee -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 together with the Commission's Replies" Special Report No. 4/2001.
-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2012. Gesetzliche Vorgaben für die Gründung eines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s. Odenburg.
- (법령)
- Council Regulation (EC) No 1782/2003 of 29 September 2003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direc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 Council Regulation (EC) No 73/2009 of 19 January 2009 establishing common rules for direc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 Gesetz über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von Daten im Rahmen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 nach den gemeinschaftlichen Vorschriften für

landwirtschaftliche Stützungsregelungen (InVeKoSDG)

Tierseuchengesetz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Stützungsregelungen und des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s (InVeKoSV)

Viehverkehrsverordnung

연구자료 D348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

발 행 2013. 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mailto:dongyt@chol.com).

---

ISBN : 978-89-6013-453-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